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8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의자 : 추경호 · 김기현 · 권성동

서지영 · 김성원 · 이현승

김정재 · 최은석 · 박수민

박성민 · 김상훈 · 이인선

박대출 · 권영세 · 윤영석

배준영 · 김승수 · 김위상

정점식 · 김기웅 · 박성훈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범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

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4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550만원”을 “1,7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